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83

발의연월일: 2021. 2. 3.

발 의 자 : 아수진비 · 안호영 · 오영환

민형배 • 이규민 • 양이원영

이탄희 · 임종성 · 윤미향

노웅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「근	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
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	
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	
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	
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	
의 직무를 수행한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7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
	<u>법률</u> _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